주요국 관세·원산지 동향

관세정책, 통상집행, 공급망·환경규제 등 주요 이슈를
원산지·공급망 리스크 관점에서 선별하여 매월 제공합니다.
미국 동향은 직전 발간호 이후 신규 사안을 중심으로,
주요국 동향은 최근 발생한 이슈를 중심으로 반영합니다.

2026
8월호

미국 동향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조사

-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15% 관세 부과 예정
- 무인항공기 시스템(UAS)·부품에 최대 100% 관세 부과 예정

관세법 제338조 관세 부과

-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주류·유제품 추가관세 등 조치에 대응해 554개 세번의 캐나다 물품에 50% 관세 부과

관세회피 단속 동향

- 잘못된 반덤핑 사건번호 신고에 따른 반덤핑관세 회피 결정 사례
- 백악관, 중국 등 고관세 국가 물품의 불법 환적 실태 및 대응방안 보고서 발표

주요국 동향

관세·환경규제 이행체계 정비

- 전자 원산지 증명서 수용 및 미국산 물품의 직접운송 증빙 강화 등 비특혜 원산지 관련 절차 정비
- PPWR 주요 이행기준 구체화 및 CBAM 이행 가이드 문서 신규 발표

미국의 기술·강제노동 관련 규제에 맞대응

- 대미 드론 수출통제 강화, 수입 사무기기 국가안보 조사 등 비관세 대응조치 도입

목재 캐비닛·세면대 캐비닛에 잠정 세이프가드 추가관세 부과

- 7월 31일부터 최대 200일간 25%의 추가관세 부과

미국 관세·원산지 동향 최신 주요 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구글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으로, 무역법 제301조 조사를 통해 EU에 관세 보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함	연합뉴스 (7.25.)
	미국 중소기업들은 강제노동 관련 제301조 관세가 각 경제권에 대한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무효화된 글로벌 관세를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함	AP (7.26.)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결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 징수액 가운데 절반 이상인 약 1,000억 달러를 이미 환급함	Reuters (8.5.)
	미국 정부는 8월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CIT의 IEEPA 관세 전면 환급 명령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며, 최종 정산 건은 개별 소송을 통해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AP (8.12.)
	미국 CIT는 800달러 이하 소액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 중단이 IEEPA상 대통령 권한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트럼프 행정부의 소액소포 관세 부과 조치를 합법으로 인정함	연합뉴스 (8.14.)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연구기획실 신통상규제팀 | 2026. 8. 31.

미국

① 무역확장법 제232조 신규 관세 조치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제232조 관세 도입 발표

▶ 미국은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의 국내 생산 기반을 회복하고 반도체·태양광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 및 최저수입가격(MIP, Minimum Import Price) 제도를 도입하는 포고령을 발표(8.6.)

* 미국의 폴리실리콘 생산비중은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반도체 웨이퍼 생산비중은 1990년 37%에서 2024년 10%로 감소. 태양광용 잉곳·웨이퍼·태양전지는 사실상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

▶ (시기) **2026년 12월 4일 오전 12시 1분부터** 적용(미 동부시간)

▶ (방식)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최저수입가격(MIP) 설정 및 15%의 추가관세 부과**

- **(MIP 설정)** MIP에 미달하거나 MIP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미제출 시 품목별 기준에 따른 추가관세 부과
- **해외 저가제품의 수입을 조정하기 위해 최소 거래가격 기준을 설정**하고, 수입자가 이를 준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것임

품목	최저수입가격	HTSUS
폴리실리콘	$21/kg	2804.61.0000
폴리실리콘 잉곳 및 웨이퍼	$100/kg	3818.00.0020, 3818.00.0040, 3818.00.0045, 3818.00.0050, 3818.00.0091
태양전지	$0.22/W	8541.42.0010, 8541.42.0080
태양광 모듈	$0.38/W	8541.43.0010, 8541.43.0080

- **(국가별 관세 부과방식)** 폴리실리콘 잉곳 및 웨이퍼,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에 15%의 추가관세 부과 **한국·일본·대만·스위스·리히텐슈타인·EU 회원국은 기본 관세와 제232조 관세 합계가 15%가 되도록 적용** 영국산에는 10%의 추가관세 부과

해당 경제권	제232조 적용	적용 방식
일반 국가	15% 추가	MFN/FTA+15%
한국,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EU 회원국	합산 15%	MFN/FTA+제232조= 15%
영국	10% 추가	MFN/FTA+10%

- **(미국 투자시 조건부 면제)** 미국 내 생산시설을 건설·보수·증설 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1월 20일까지 착공 확약 시 투자 규모에 상응하는 일정 범위에서 제232조 관세 면제 가능

▶ 한국산은 기존 관세와 제232조 관세의 합산세율이 15%로 제한되어, 기존 관세에 15%가 추가되는 일반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관세 부담이 낮음

무인항공기 시스템(UAS) 및 그 부품에 대한 제232조 관세 도입 발표

▶ 미국은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무인항공기 시스템(UAS, Unmanned Aircraft System) 및 부품에 **중량·기능 및 부품 유형에 따라 차등화된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발표(8.13.)

* 상업용·군사용 UAS 핵심부품의 해외 공급원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위험 및 사이버보안 취약성을 초래

▶ (시기) **2026년 9월 3일 오전 12시 1분부터** 적용(미 동부시간)
부속서 3 대상 부품은 2027년 2월 9일 오전 12시 1분부터 적용(미 동부시간)

▶ (방식) UAS 및 부품에 최대 100%의 제232조 추가관세 부과

- **(부속서 1)**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UAS, 열화상 장비 탑재 UAS, 도킹스테이션 및 특정 핵심부품 **100%** 적용[1)]
- **(부속서 2·3)**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UAS 및 그 밖의 특정 UAS 부품 **25%** 적용[2)]
- **(국가별 차등 적용) 한국**·일본·대만·스위스·리히텐슈타인·EU 회원국에는 **기본 관세 포함 총 15%** 적용, 영국에는 기본 관세에 10%의 제232조 관세 추가 적용

해당 경제권	제232조 적용	적용 방식
일반 국가	100% 또는 25% 추가	MFN/FTA+100% 또는 25%
한국,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EU 회원국	합산 15%	MFN/FTA+제232조= 15%
영국	10% 추가	MFN/FTA+10%

* 한국 등 우대 대상국산 제품이라 하더라도 핵심부품 및 기술이 사실상 전부(substantially all) 미국 또는 지정국산임을 입증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대 세율이 적용됨

- **(미국 투자시 조건부 면제)** 미국 내 생산시설을 건설·보수·증설 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1월 20일 이전 착공을 확약한 기업은 건설기간 동안 완공 후 예상 연간 생산량에 상응하는 UAS·부품 등에 제232조 관세 면제 가능

▶ 한국산 제품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내 수출·제조업체는 미국 수입업체의 인증에 필요한 핵심부품 및 기술의 원산지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음

② 미국, 캐나다에 관세법 제338조[3)] 관세 부과

▶ 미국은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주류·유제품에 대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여 미국 상업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관세법 제338조에 근거하여 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3건의 포고령을 발표(7.20.)

1) 부속서 1 대상 HTSUS: 8504.40.9580, 8537.10.9170, 8806.21.00, 8806.22.00, 8806.23.00, 8806.24.00, 8806.29.00, 8806.91.00, 8806.92.00, 8806.93.00, 8806.94.00, 8806.99.00, 8807.10.0015, 8807.10.0030, 8807.10.0060, 8807.20.0015, 8807.20.0030, 8807.20.0060, 8807.30.0015, 8807.30.0030, 8807.30.0060, 8807.90.9015, 8807.90.9030, 8807.90.9060
열화상 장비 탑재 UAS 및 25kg 초과 UAS 부품에만 적용(소매배송용·농업용·미 전쟁부 판매용 부품 제외)

2) 부속서 2·3 대상 HTSUS: 8806.21.00, 8806.22.00, 8806.23.00, 8806.91.00, 8806.92.00, 8806.93.00, 8807.10.0015, 8807.10.0030, 8807.10.0060, 8807.20.0015, 8807.20.0030, 8807.20.0060, 8807.30.0015, 8807.30.0030, 8807.30.0060, 8807.90.9015, 8807.90.9030, 8807.90.9060
부속서 1·3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부속서 1의 100% 세율 우선 적용

3) 외국의 불평등한 부과 또는 차별로 미국 상업에 부담이나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이를 상쇄하기 위해 해당 국가 상품에 종가 최대 50%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별도의 사전 조사 절차가 선행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조치 기간의 상한도 없음

구분	미국 측이 제시한 차별 근거
자동차	2025년 4월 9일부터 **USMC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미국산 자동차에 25% 추가관세 부과** 및 업체별 관세율할당(TRQ) 운영 ⇨ 2025년 4월~2026년 3월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2%, 56억 달러 감소
주류	2025년 3월부터 **미국산 주류만 구매·유통·소매 판매 중단** ⇨ 2025년 3월~2026년 2월 캐나다의 미국산 주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1%, 5억 8200만 달러 감소
유제품	USMCA에 따른 미국산 치즈 관세율할당(TRQ)의 배정 기준을 EU산보다 불리하게 적용 ⇨ 소매업체의 미국산 치즈 TRQ 물량 취득·사용을 제한하여 낙농업계 매출 손실 발생

▶ (시기) **2026년 8월 22일 오전 12시 1분부터** 적용(미 동부시간)

▶ (방식) 가구, 시멘트, 주류 등 총 554개 HTS 세번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추가관세 부과 USMC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도 면제되지 않음
무역확장법 제232조 대상 품목, 칼륨비료(potash), 일부 수산물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미국 정부는 캐나다와의 양자 협상 진전을 이유로 포고령 제11056호를 통해 당초 8월 19일 시행 예정이던 캐나다산 일부 품목에 대한 50% 추가관세의 시행일을 8월 22일로 3일 유예하였으나, 8월 21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캐나다가 미국의 신규 관세에 대해 동일한 규모(dollar-for-dollar)의 보복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는 등 양국 간 관세 갈등이 재차 심화되는 양상임

▶ 관세법 제338조에 근거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사전 조사 절차가 선행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다른 교역국에도 제338조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음

③ CBP의 반덤핑관세 회피 결정[4] 및 백악관의 불법 환적 보고서 발표

EAPA 사건번호 8210(2026.7.30.) 주요 내용

항목	내용
조사 대상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탄소·합금강 나사봉 • 관련 조치: 인도산 나사봉 대한 반덤핑관세 명령(2020.4.9.)
조사 배경	14개 수입업자가 인도산 탄소·합금강 나사봉을 수입하면서 Type 03(반덤핑·상계관세 대상) 신고 시, 실제 제조·수출업체에 적용되는 업체별 반덤핑 사건번호 대신 현금예치율이 0%인 기타 업체용 사건번호(A-533-887-000)를 신고하여 반덤핑관세 현금예치금 납부를 회피하였다는 혐의 제기
조사 결과	수입신고자료, 송장·포장명세서 등 수입 관련 서류와 정보요청서(RFI) 답변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수입업자가 조사기간 중 모든 반덤핑 신고에 기타 업체용 사건번호를 적용하거나 장기간 이를 적용한 후 업체별 사건번호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됨 또한 일부 수입업자는 CBP Form-28을 받거나 다른 관세조치와 관련하여 사후정정을 하면서도 반덤핑 사건번호를 수정하지 않음
CBP 판단	수입업자들은 통관업체의 실수, 전산시스템 문제, 반덤핑·상계관세 제도에 대한 경험 부족 및 단순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하였으며, 이후 사후정정, 자진신고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함 CBP는 고의 여부와 관계 없이 회피를 판단하며, 잘못된 반덤핑 사건번호 신고로 인해 수입 당시 납부해야 할 반덤핑관세 현금예치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반덤핑관세 회피를 인정함

4) 2026년 7월 CBP가 관세회피로 최종결정한 EAPA(Enforce and Protect Act, 집행 및 보호법) 사건을 소개함

▶ 반덤핑관세 대상 물품 수입 시 비록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통관업체의 실수나 단순 착오도 회피 판정을 면하는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조·수출업체별 사건번호와 현금예치율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규정준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백악관, 「대규모 환적 사기(The Great Transshipment Scam)」 보고서 발표 (8.13.)

▶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실은 국가별 관세 차이를 악용하여 중국 등 고관세 국가의 물품을 제3국을 거쳐 다른 국가산인 것처럼 미국에 수출하는 불법 환적(illegal transshipment)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주요 방식으로 ① 라벨 변경, ② 재포장, ③ 송장 재발행, ④ 사소한 가공, ⑤ 원산지 허위 신고 등을 제시함

▶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 중국 연계 물품의 원산지를 다른 국가산으로 위장하여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데 이용되는 네트워크로, 중국 연계 환적 위험이 높은 국가를 3개 유형으로 구분함

구분	유형	주요 기준	해당 국가
제1그룹 (Tier 1)	다각화된 대규모 교역국	중국 연계 물품의 교역 규모가 크고 산업기반이 다각화되어 있으며, 미국 수출 플랫폼의 광범위한 정상 교역 속에 환적 위험이 내재	캐나다, EU,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한국, 대만
제2그룹 (Tier 2)	중국과 경제적 통합도가 높은 대규모 교역국	상당한 환적 규모와 중국 연계 공급망·원자재 조달·제조 플랫폼·물류 시스템 또는 역내 우회 경로와의 높은 통합도 보유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튀르키예, 베트남
제3그룹 (Tier 3)	소규모 기회주의적 대상국	환적 규모는 작지만 저임금, 자유무역지대, 보세창고, 항만 접근성, 제한적인 세관 집행역량 등 환적에 사용할 수 있는 여건 보유	칠레, 싱가포르,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등[5]

• **(AI 기반 검증)** 글로벌 무역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디텍티브 보더(Detective Border)를 통해 **비정상적인 운송경로, 의심스러운 선하증권, 원산지 허위 신고, 가격 불일치 및 생산능력 불일치** 등을 식별하고, 행정명령 제14411호를 통해 수입자 책임 및 세관 집행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은 제1그룹에 포함된 만큼, **향후 미국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강화에 대비**하여 생산공정 및 원산지 입증자료 관리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임

5)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조지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라오스, 모로코, 미얀마, 오만, 파나마, 페루, 필리핀,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부록 1 **2026년 미국의 관세부과 현황표** 작성일: 2026.08.15.

2026년 미국의 관세부과 현황표

구분	원산지		트럼프 2기 추가 관세				기존 적용 관세[2]				
			무역확장법 제232조 품목별 관세	무역법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	관세부과율	부과 구조		무역법 제301조[3]		기본관세 자유무역협정 (FTA)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자동차·자동차 부품[1]	한국·유럽연합(EU)·일본		15%		15%	품목별 관세	+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or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25%		25%			25~100% (전기차)				
	캐나다·멕시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충족	① 완성차 조건 : 상무부 승인 대상 : 비미국산부품만 25% ②자동차부품 0%		① 완성차 비미국산부품만 25% ②자동차부품 0%							
		USMCA 미충족	25%		25%							
철강·알루미늄·구리 중심 (부속서 1-A)	중국		50%		50%	품목별 관세	+	25%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or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영국		25%		25%							
	그 외 국가		50%		50%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중심 (부속서 1-B)	중국		25%		25%	품목별 관세	+	25%	+	기본세율 또는 FTA 세율	or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영국		15%		15%							
	그 외 국가		25%		25%							
고정식 산업기계·전력망 장비 등 일부 제품 (부속서 3)[4]	중국		15%		15%	품목별 관세	+	7.5% or 25%	+	기본세율 또는 FTA 세율	or	반덤핑 및 상계관세
	러시아·벨라루스·쿠바·북한		25%		25%							
	그 외 국가		15%		15%							
이동식 산업기계·농기계 등 일부 제품 (부속서 1-C)[5]	한국·EU·일본 등		15%		15%	품목별 관세	+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or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25%		25%			25%				
반도체 및 파생상품[6]	중국		25%		25%	품목별 관세	+	25%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or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그 외 국가											
그 외 제품[7]	한국·일본[8]			12.5%	12.5%	국가별 관세	+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or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12.5%	12.5%			7.5%~100%				
	EU			10%	10%							
	캐나다·멕시코	USMCA 충족			0%							
		USMCA 미충족		10%	10%							

1) 한국은 EU · 일본과 동일한 15%로 합의(기본세율 포함, 2025년 11월 1일부터 적용)
버스 및 기타 차량 (제8702호: 운전자 포함 10명 이상 수송할 수 있는 차량, 미국 주석 38(c) 열거품목)에는10%가 적용되고,
중대형차량(제8701·8704·8705·8706·8709호, 미국주석 38(b) 열거 품목)에는25%가 적용됨

2) 반덤핑·상계관세와 기본관세/FTA는 중복부과가 되지 않음. 단, 제301조와 기본관세/FTA 및 제301조와 반덤핑·상계관세는 중복 부과 가능

3) 미국은「무역법」제301조에 근거하여 중국산 물품에 대해 25%에서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적용 대상: 배터리와 부품(25%), 철강 및 알루미늄제품(25%), 광물자원(25%), 영구자석(25%), 반도체(50%), 태양전지(50%), 전기차(100%) 등

4) 포고령 제11021호(제11032호에서 적용 대상 품목 일부 추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단, 러시아산 알루미늄 200% 관세는 계속 적용됨

5) 포고령 제11032호. 2026년 6월 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6) 포고령 제11002호. 제8471.50호·제8471.80호·제8473.30호에 해당하더라도 기술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반도체에만 적용됨

7) 의약품의 경우 포고령 제11020호 부속서 3의 회사에는 7월 31일 이후, 그 외는 9월 29일 이후 100%, 한국은 협정에 따라 15%가 적용될 예정임
목재 및 파생상품의 경우 한국·EU·일본은 10% 또는 15%, 그 외는10% 또는 25%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품목은 아래와 같음

구분		2025.10.14.~	2027.01.01.~	비고
연목		10%	10%	무역협정 완료국가 영국: 10% 한국·EU·일본: 15% (한국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적용)
가구	목재가구	25%	30%	
	주방 캐비닛, 세면대	25%	50%	

무인항공기 시스템(UAS)·부품에 대해 9월 3일 이후 최대 100%가,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대해 12월 4일 이후 15%가 적용될 예정임

8) MFN 세율이 12.5% 이상이면 MFN 세율만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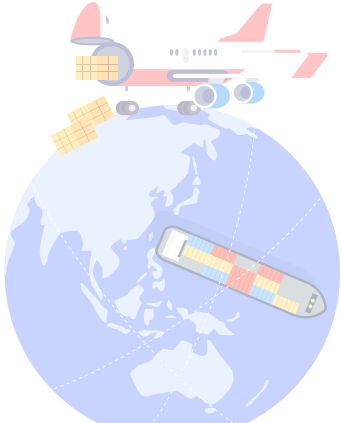

부록 2 2026년 미국 관세정책 주요 동향 타임라인

작성일: 2026.08.15.

날짜	내용	출처
1.14.	• 1월 15일부터 부속서에 명시된 기술요건 충족하는 반도체 및 파생 제품에 25% 관세 부과 • 미국 내 데이터 센터에서의 사용·연구개발 등 제외	반도체,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그 파생제품의 미국 수입 조정 백악관
1.29.	• 쿠바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절차 마련	쿠바 정부의 대미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백악관
2.6.	• 이란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승인	이란 정부의 대미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백악관
2.6.	•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 이행 등을 이유로 인도산 수입품에 대한 기존 25% 추가 관세 철폐	러시아 연방 정부의 대미 위협 대응을 위한 미국의 관세 조정 백악관
2.6.	• 미국은 인도산 수입품에 18% 상호관세율 적용, 인도는 미국산 공산품·농식품 관세 인하 등 잠정 합의	미국-인도 공동 성명 백악관
2.9.	• 미국은 방글라데시산 제품에 19% 상호관세율 적용, 방글라데시는 미국산 공산품·농식품 시장접근 확대 등 합의	미국-방글라데시 상호 무역 협정에 대한 공동성명 백악관
2.12.	• 미국은 북마케도니아산 상품에 15% 상호관세율 유지, 북마케도니아는 미국산 공산품·농식품 관세 철폐 등 합의	미국-북마케도니아 간 상호적이고 공정하며 균형 잡힌 무역 협정의 틀에 관한 공동 성명 백악관
2.19.	• 미국은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19% 상호관세율 유지,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 합의	미국-인도네시아 무역 협정 최종 확정 백악관
2.20.	•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부과한 상호관세·마약관세 등이 위임 권한을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판결	Learning Resources, Inc., et al. v.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t al. (No. 24-1287) 미국 연방대법원
2.20.	• 대법원 판결에 따라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을 발령	특정 관세 조치 종료 백악관
2.20.	•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해 2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150일간 모든 수입품에 10% 임시 수입 추가세 부과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한 임시 수입 추가세 부과 백악관
2.20.	• 소액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 중단 조치 지속	모든 국가에 대한 소액 면세(de minimis) 적용 중단 지속 백악관
3.4.	• 국제무역법원(CIT)은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미정산 및 미확정 정산 건에 대해 IEEPA 관세를 제외하고 정산·재정산하도록 명령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 (No. 26-01259) 미국 국제무역법원
3.5.	• 미국 24개 주는 무역법 제122조의 국제수지 적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법하다며 임시 수입 추가세의 무효 확인 및 집행 금지를 청구	State of Oregon et al. v. Trump et al. (No. 26-01472) 미국 국제무역법원
3.6.	• 국제무역법원(CIT)은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즉시 이행 불가 진술을 근거로 IEEPA 관세 환급 명령의 즉시 이행 부분을 유예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 (No. 26-01259) 미국 국제무역법원
3.11.	•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등 16개 경제권의 제조업 부문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 및 생산설비 관련 조치·정책·관행에 대해 제301조 조사 개시를 공고	제301조 조사 개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 및 생산 관련 특정 경제권의 조치·정책·관행 연방관보
3.12.	•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등 60개 경제권의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 부과 및 집행 관련 조치·정책·관행에 대해 제301조 조사 개시를 공고	제301조 조사 개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도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권의 조치·정책·관행 연방관보

3.12.	• CBP는 IEEPA 관세 환급을 위해 개발 중인 ACE 내 환급처리시스템(CAPE)의 개발 진척도를 항목별 40~80% 수준으로 보고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 (No. 26-01259) 미국 국제무역법원
4.2.	• 특허 의약품 및 관련 원료에 100% 관세 적용 발표, 한국은 한-미 합의에 따라 15% 적용 예정 • 국내생산 이전 승인 기업, 제네릭 의약품 등 감면·예외 가능	미국으로의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 조정 백악관
4.2.	• 4월 6일부터 무역확장법 제232조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를 금속 함량 비율이 아닌 수입품 전체 과세가격 기준으로 50%, 25%, 15% 차등 관세율 적용	미국으로의 알루미늄, 강철, 구리 수입 조정 조치 강화 백악관
4.6.	• IEEPA 관세 환급 대표 사건인 Atmus Filtration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 취하에 따라 소송 종료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 (No. 26-01259) 미국 국제무역법원
4.13.	• CBP는 4월 20일 ACE 내 환급처리시스템(CAPE)을 배포하고, 수입업자·통관대리인의 환급 신청 시 관세 차액과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지	CSMS #68340863 – IEEPA 관세 환급을 위한 CAPE 기능 배포 안내 관세국경보호청
5.6.	• USTR은 중국의 기술 이전·지식재산권·혁신 관련 제301조 관세 조치에 대한 두 번째 4년 주기 검토를 개시	제2차 4년 주기 검토 개시: 중국의 기술 이전·지식재산권·혁신 관련 법·정책·관행 미국 무역대표부
5.6.	• CBP는 제232조 알루미늄·철강·구리 관세 관련 무관세 코드 신설 등 기술적 수정 사항을 공지	CSMS #68554727 – 알루미늄, 철강 및 구리 수입에 대한 제232조 관세 기술적 수정 안내 관세국경보호청
5.27.	• CBP는 대만산 자동차부품, 목재제품 및 민간항공기 부품에 대한 제232조 관세 조정과 관련해 통관 신고 지침을 공지	CSMS #68762890 – 미-대만 무역안보협정 관련 관세 조정사항 이행 지침 관세국경보호청
6.1.	•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동식 산업장비·농기계 등 일부 제품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임시 감면	미국으로의 알루미늄, 철강, 구리 수입에 대한 관세 체계 추가 조정 백악관
6.3.	• 수입신고인(IOR) 자격·보증·식별정보 요건 강화, 공급망·제품정보 제출의무 및 우선 단속 대상 정비	세관 집행 강화 백악관
6.3.	•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 도입·집행 미흡이 불합리하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 또는 제한을 초래한다고 판단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조치 도입 및 효과적 집행 실패와 관련한 각국의 조치·정책·관행에 대한 무역법 제301조 조사보고서 미국 무역대표부
6.15.	• 상고허가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중국산 List 3·4A 품목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 확대 조치의 적법성을 인정한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유지	HMTX Industries, LLC v. United States (No. 25-1012) 미국 연방대법원
6.18.	• USTR은 독일의 의약품 가격정책이 미국에 과도한 글로벌 연구개발비 부담을 초래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제301조 조사를 개시	USTR, 독일의 혁신 의약품에 대한 지속적인 과소지불 관련 301조 조사 개시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
6.25.	• 미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일부 관세 인하·철폐와 투자협력 확대를 포함한 초기 무역합의에 도달하고 상호무역·투자협정 협상을 가속화	미국과 우즈베키스탄, 무역협상의 조기 성과를 발표하고 상호무역·투자협정 협상을 가속화 미국 무역대표부
6.29.	• 미국은 비료 공급 부족에 대응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로코산 인산염 비료에 대해 최대 8개월간 관세 및 추정관세 예치금 징수를 면제	비상사태 선포 및 모로코산 인산염 비료의 한시적 무관세 수입 승인 백악관
7.9.	• 미국은 상업용 항공기·제트엔진 및 관련 부품에 즉시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교역상대국과 협상한 뒤 180일 이내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업용 항공기·제트엔진 및 항공기·엔진 부품의 수입 조정 백악관

7.15.	• 미국은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한 브라질산 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	브라질의 디지털 무역·특혜관세 등 정책·관행에 대한 무역법 제301조 조치 연방관보
7.20.	• 미국은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주류·유제품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이유로 관세법 제338조에 근거하여 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추가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 캐나다산 수입품에 추가관세 부과 백악관
7.20.	• 미국 내 알루미늄 제련시설을 신설·증설·개보수하는 기업에 대해, 승인된 온쇼어링 계획 이행 시 일정 규모의 1차 알루미늄 수입물량에 제232조 관세율의 50%를 적용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	미국의 알루미늄 수입 조정조치 추가 강화 백악관
7.23.	• 미국은 2026년 7월 24일부터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미비·집행 부족을 이유로 60개 경제권에 대해 10% 또는 12.5% 관세를 부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조치 도입 및 효과적 집행 실패와 관련한 각국의 조치·정책·관행에 대한 무역법 제301조 조치 백악관
7.31.	• 석영 표면제품(QSP) 산업의 심각한 피해에 대응해 2026년 8월 15일부터 4년간 관세할당제(TRQ) 형태의 세이프가드를 시행	석영 표면제품 수입 경쟁에 대한 긍정적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백악관
8.6.	• 미국은 2026년 12월 4일부터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최저수입가격(MIP) 적용하고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의 제232조 관세를 부과	미국으로의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제품의 수입 조정 연방관보
8.13.	• 미국은 2026년 9월 3일부터 특정 무인항공기 및 핵심 부품에 100%, 소형 무인항공기에 25%의 제232조 관세를 부과	미국으로의 무인항공기 시스템 및 무인항공기 부품 수입 조정 연방관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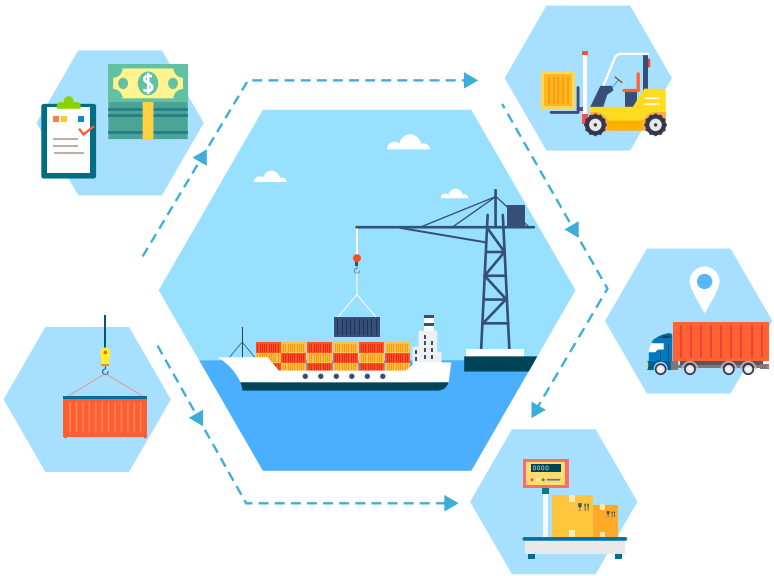

주요국 동향

① EU 관세·환경·탄소규제 이행체계 구체화

이번 호에서는 EU 통상·환경·탄소규제 분야에서 최근 진행중인 3가지 정책동향을 살펴봄

❶ 관세법 시행규정 개정: 일부 농산물 대상 전자 원산지증명서 사용 허용, 미국산 물품의 관세우대를 위해 직접운송·비가공(non-alteration) 입증 요구 등 절차규정 신설
❷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FAQ 보완: 규정적용을 앞두고 주요 이행기준 구체화
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동향: 집행위원회, 확정기간 이행지원 위한 가이드 문서 10건 발표

❶ 관세법 시행규정 개정: 비특혜 원산지 증명절차 일부 변경 (Regulation (EU)2026/1422)

- **(전자 원산지 증명서 수용)** 2026년 7월 1일부터,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일부 농산물 관세할당 품목에 대해 전자 원산지 증명서 사용이 가능**해짐. 기존 서면 중심의 발급·제출 방식에서, 앞으로는 EU의 농산물 비관세 절차 전자시스템인 ELAN[6](ELectronic system for Agricultural Non-customs formalities)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공·교환할 수 있고, EU 관세당국도 증명서의 진위를 온라인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함

[전자 원산지 증명서가 적용되는 품목 예시]

품목	적용대상 예시	주요 내용
설탕	호주·브라질·쿠바산 등 일부 관세할당 설탕 및 정제용 원당	개별 관세할당표에서 관세법 시행규정 제57조~제59조에 따른 전자 원산지 증명서 요구 (제34조, 부속서 IV)
마늘	이란·대만·베트남산 등 일부 신선·냉장 마늘	전자 원산지 증명서와 함께 직접운송 요건을 별도로 적용 (제39조, 부속서 VI)
가금육	브라질·태국산 일부 가금육 및 가금육 조제품	원산지국 관할기관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며, ELAN을 통해 전자적으로 교환·검증 (부속서 XII)

* 시행규정 (EU)2020/761 본문 또는 개별 관세할당표에서 관세법 시행규정 제57조부터 제59조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품목을 예시로 함

- **(미국산 물품 관세혜택 요건 신설)** 2025년 8월 21일, 미국과 EU는 '상호적이고 공정하며 균형잡힌 무역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on an Agreement on Reciprocal, Fair and Balanced Trade)'에 합의함. **일명 '턴베리 합의(Turnberry Agreement)'에 따라 EU는 일부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을 조정**하고 일부 농산물에 우대 시장접근을 제공하며, 미국은 EU산 제품에 최혜국(MFN) 세율과 15% 중 높은 세율을 상한으로 적용하기로 함
- 2026년 6월 25일, EU 이사회는 위 합의상 관세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들을 채택함. 우선 Regulation (EU) 2026/1455(미국산 물품 관세조정 및 관세할당 개방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일부 미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율 조정 및 신규 관세할당(TRQ)이 시행되고 있으며,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될 예정
- 한편 EU-미국 간에는 아직 정식 특혜원산지협정(FTA 등)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Regulation (EU) 2026/1455 제6조는 특혜원산지규정이 별도로 채택되기 전까지**, 물품의 **미국산 여부를 비특혜원산지규정에 따라 판정**하도록 명시함

6) EU에서 농산물 비관세 수입 절차(위생·검역, 수입 허가 등)를 디지털화하여 처리하는 행정 시스템을 의미

- Regulation (EU) 2026/1422는 같은 날(2026.6.25) 채택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러한 비특혜원산지 판정 및 Regulation (EU) 2026/1455에 따른 관세조정·관세할당 혜택 적용 시 요구되는 증명절차를 규정함
- 이에 따라 미국산 물품에 조정관세율 또는 관세할당을 적용받으려면 ①미국에서 직접운송되는 경우 선하증권, 운송계약서 등으로 **미국에서 EU로 직접 운송되었음을 입증** 하고, ②**제3국 경유 시** 물품이 세관 감독 아래 있었으며 표시·라벨·봉인 부착 등의 작업 외에는 변경이 없었음을 **세관 운송서류, 비조작증명서 등으로 입증하도록 하여 세관 집행을 강화하고 우회 수입을 방지**하고자 함

▶ 이번 개정으로 인해 EU 관세법상 원산지 결정기준이 변경된 것은 아님. 다만 미국산 물품이더라도 직접운송 또는 제3국에서의 비가공을 입증하지 못하면 조정관세율이나 관세할당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운송경로와 증빙서류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❷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7] FAQ 제2판 발표: 규정 적용 전 주요 이행기준 구체화 (8.3.)

- PPWR은 EU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재활용성 확보, 유해물질 제한, 표시사항 등을 의무화함.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며, 제조업체뿐 아니라 수입업체·유통업체·전자상거래사업자 등 **EU 시장에 포장재를 출시하는 모든 사업자가 적용대상**임. 집행위원회는 규정 적용을 앞두고 2026년 8월 3일 FAQ 제2판을 발표해 주요 이행기준을 구체화함
- **(제조업체 판단기준 구체화)** PPWR상 "제조업체"란 자신의 명칭이나 상표로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그 설계·제조를 타인에게 의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함. **제조업체는** 해당 포장이 **PPWR의 각종 요건(재활용성, 유해물질 제한 등)에 적합함을 최종적으로 증명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짐
- 이번 FAQ에서 포장에 표시된 명칭·상표와 포장의 설계·사양에 대한 결정권을 주요 기준으로 제조업체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 함. 이에 따라 실제 포장을 생산한 사업자가 아니라 브랜드 소유자나 주문자가 제조업체로 인정될 수 있음

구분	PPWR상 제조업체	비고
브랜드가 없는 일반 운송용 포장	포장을 물리적으로 제조한 회사	운송 목적으로 상자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은 브랜딩이 아니므로 제조업체로 간주되지 않음
브랜드가 표시된 포장	해당 브랜드로 출시한 회사	초소규모 기업이고 공급자가 동일한 회원국에 소재할 시 포장물 또는 포장된 제품의 공급자를 제조업체로 봄
한 회사의 명칭과 다른 회사의 상표가 표시된 포장	포장 디자인과 사양을 결정하는 회사	포장의 특성을 결정하지 않는 상표권자는 제조자로 간주되지 않음 결정권을 가진 주체는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별로 평가함

- **(포장 공급업체의 자료 제공)** 포장재 공급업체는 제조업체가 PPWR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기술정보와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 **(포장 식별기준 명확화)** 포장 식별을 위해 모든 구성요소에 유형·배치·일련번호 등 식별정보를 각각 표시할 필요는 없음. 예를 들어 플라스틱 컵, 뚜껑, 슬리브 또는 라벨로 구성된 요거트 컵의 경우 판매용 포장의 구성요소 중 하나에만 식별정보를 표시해도 됨
- **(EU 단순경유 시 PPWR 미적용)** EU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운송되는 포장 또는 포장제품이 EU에서 자유유통을 위해 신고되거나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다면 PPWR을 적용하지 않음

7)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 8월 12일부터 적용되는 PPWR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곧바로 판매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다만 시정 요구를 받은 이후에도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판매 금지,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PPWR상 제조업체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합성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❸ 집행위원회,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8] 가이드 문서 발표 (8.14.)

- 집행위원회는 **CBAM의 확정기간(definitive period)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건의 가이드 문서**를 발표함. 확정기간에는 탄소집약적 상품의 EU 수입자에게 모니터링·보고 및 재정적 의무가 부과되며, **이번 가이드는 EU 역외에서 CBAM 대상 상품을 생산하는 설비 운영자, 인증받은 CBAM 신고인 및 검증기관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함**
- **(일반 가이드 4종)** CBAM 개념·이행주기·역할·주요 단계·면제 요건을 다루는 입문 가이드, EU 역외 운영자를 위한 실무 가이드,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및 무상할당에 따른 CBAM 인증서 조정분 산정 방법 등 제시함
- **(부문별 가이드 6종)** 시멘트, 수소, 비료, 철강, 알루미늄, 전력 등 CBAM 적용 6개 부문별로 생산공정·가치사슬·모니터링 및 보고 고려사항을 실제 계산 예시와 함께 제공. 아울러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실제값(actual values) 활용, 모니터링 계획 수립, 전환기간 대비 내재배출량 산정방식의 변경사항, 기본값(default values) 및 무상할당 조정 적용방법 등을 안내함

구분	가이드 문서	주요 내용
일반	CBAM 개념 소개	CBAM 기본 개념, 이행주기, 이해관계자 역할, 주요 일정 및 면제 요건 설명
	EU 역외 운영자를 위한 간편 가이드	비EU 생산설비 운영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배출량 모니터링·보고 및 검증 관련 주요 개념과 요건 안내
	내재배출량 산정	CBAM 상품의 내재배출량 산정·모니터링·보고 의무 및 주요 유의사항 설명
	무상할당 조정 산정	EU 배출권 거래제도(ETS) 무상할당을 반영한 CBAM 인증서 수량 조정 방법 및 필요한 정보 설명
부문별	시멘트 분야별 가이드	부문별 생산공정·가치사슬·배출량 모니터링 및 보고 시 고려사항에 대한 개요와 산정사례 제시
	수소 분야별 가이드	
	비료 분야별 가이드	
	철강 분야별 가이드	
	알루미늄 분야별 가이드	
	전력 분야별 가이드	

▶ CBAM이 전환기간에서 확정기간으로 전환됨에 따라 배출량 데이터의 모니터링·보고 및 검증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국내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EU 수출기업은 부문별 가이드를 참고하여 실제값 활용에 필요한 모니터링 체계와 배출량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8)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 중국 미국의 기술·강제노동 관련 규제에 맞대응[9]

-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7월 28일 공급망 및 사이버보안 위험을 이유로 외국산 휴머노이드·사족보행 로봇 등 **첨단 로봇과 전력 인버터를 안보위협 장비 목록에 추가**하여 신규 제품의 미국 시장진입을 제한함. 이어 **미 국토안보부(DHS)는** 7월 31일 신장 지역 강제노동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 43개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여 이들 기업이 생산에 관여한 제품의 미국 수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함
-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8월 5일 ① 미국으로 수출되는 드론과 주요 부품·기술에 대한 **수출 심사를 강화**하고, ② 중국 제품 인증 과정에서 미국 기관이 수행하던 현지 공장검사를 제한함. 또한 ③ 미국의 대중국 규제에 관여한 미국 시험·인증기관 Compliance Testing LLC와 ④ 신장 관련 제재에 관여한 **미국 기관·기업 6곳에 대해 중국 기업과의 거래·협력을 금지**하고, ⑤ 수입 프린터·복사기 등 사무기기가 중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

* 6개 기관·기업: Applied DNA Sciences, Inc., Stratum Reservoir, LLC., Altana Technologies, Inc.,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Verite Group, Inc., Human Rights in China

- 이번 조치는 추가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무역제한보다는 **수출통제, 특정 기관 제재, 국가안보 조사 등 다양한 비관세 수단을 활용한 선별적 대응**으로, 미·중 간 통상 갈등이 첨단기술, 강제노동, 제품 인증 등으로 확대되는 만큼 관련 기업은 수출입 규제 변화와 공급망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캐나다 목재 캐비닛·세면대 캐비닛에 잠정 세이프가드 추가관세 부과[10]

- 캐나다 정부는 자국 목재품연합의 요청에 따라 4월 20일 목재 캐비닛·세면대 캐비닛, 원목·복합목재 바닥재, 복합목재 수납가구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4월 21일 해당 제품들의 수입 증가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함
- 캐나다 정부는 조사 기간 중 국내 생산업체가 직면한 피해와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7월 31일부터 최대 200일간 특정 **목재 캐비닛, 세면대 캐비닛 및 부분품에 대해 과세가격(value for duty)의 25%에 해당하는 잠정 세이프가드 추가관세(surtax)를 부과함**

[적용대상 캐나다 세번]

9403.40.00.10	9403.60.10.31	9403.60.10.39	9403.91.00.90

- 미국,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 및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되며, 한국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산 제품에는 25%의 추가관세가 적용됨
-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가 수입 증가로 인해 자국 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잠정조치는 즉시 종료됨. CITT는 10월 1~9일 공청회를 거쳐 2027년 1월 15일까지 최종 조사결과를 제출할 예정으로, 최종 판정 및 후속 세이프가드 조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9) 상무부 보도자료(8.5.), AP(8.5.) 등 참고
10) 재무부 보도자료(7.31.), 정부 명령(7.31.) 등 참고